

|           |                      |
|-----------|----------------------|
| 의안번호      | 제593호                |
| 의결<br>연월일 | 2013년 월 일<br>(제325회) |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
| 발의자   | 임헌경 의원 외 6명  |
| 발의연월일 | 2013년 12월 2일 |

#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헌경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593 |
|----------|-----|

발의연월일 : 2013년 12월 2일  
발의자 : 임헌경, 이광진, 김종필,  
강현삼, 김영주, 김재종,  
박문희 의원

## 1. 제정이유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내 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조, 제3조)

나. 위험도 평가 실시 요청(안 제4조)

다. 위험도 평가지원반의 구성·운영 및 관리(안 제5조, 제6조)

라. 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경비지원(안 제7조, 제8조)

## 3. 조례안 : 붙임

## 4.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 불임

6.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7. 관련부서 협의 : 균형건설국 치수방재과와 협의

8. 입법예고 : 13. 11. 11. ~ 13. 12. 1.까지

##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예방하고,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운영되는 충청북도 내 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지진발생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도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 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고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이란 위험도 평가를 위해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군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말한다.
3.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이란 건축·토목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충청북도 및 인근 지역 거주자 중 위험도 평가단으로 등록하고 제1호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반”(이하 “평가지원반”이라 한다)

이란 피해지역 평가단과 인근 시·군의 평가단의 지원으로 평가업무가 어려운 경우 피해를 입지 않은 충청북도 인근 시·도 평가단, 해당 시설물의 관리기관, 건축·토목 등 관련 협회·단체의 전문가를 지원받아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충청북도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임시적으로 구성·운영하는 지원반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충청북도 지역본부장의 관할구역 내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4조(평가 실시 요청 등) ① 충청북도 지역본부장은 피해지역 시·군 지역본부장에게 평가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고, 실시 시기와 기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충청북도 지역본부장은 시·군 지역본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요구 또는 요청을 받은 시·군 지역본부장과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평가지원반의 구성·운영 등) ① 충청북도 지역본부장은 지진 피해지역의 평가단과 인근 시·군 평가단의 지원으로 평가가 어려운 경우 평가지원반을 구성·운영 및 지원할 수 있다.

② 평가지원반의 반장은 지진재난대책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평가지원반의 반원은 지진피해를 입지 않은 인근 시·도 평가단, 해당 시설물의 관리기관, 건축·토목 등 관련 협회나 단체의 전문가를 파견받아 성별을 고려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증원할 수 있다.

④ 평가지원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발생 시 정보수집
2. 충청북도 내 시·군 및 인근 충청북도 지역본부장의 평가 지원 요청
3. 지진피해 시·군 및 시설물에 대한 평가 지원
4. 그 밖에 충청북도 내 시·군 평가단 지원에 관한 업무

제6조(평가단원의 관리 등) ① 충청북도 지역본부장은 시·군에서 등록·관리하는 평가단원을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충청북도 지역본부장은 평가에 관한 세미나 또는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시·군 평가단원의 교육·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 ① 충청북도 지역본부장은 인근 시·도 지역본부장으로부터 평가와 관련한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내 지진피해를 입지 않은 시·군 지역본부장 및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지원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지원 요청을 받은 시·군 지역본부장 및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지원을 요청한 시·도 지역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평가 지원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경비지원) 평가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평가지원 반원에게는 업무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등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지진재해대책법]

- 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① 지역본부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한 경우 인근 시·도 또는 시·군·구 거주자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지역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